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832호 2011. 5. 31(화)

포항시보

◀ 훈 령 ▶

○포항시 물가모니터 운영 규정(제235호) 2

◀ 입법예고 ▶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제2011-519호) 5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제2011-517호) 9

◀ 고 시 ▶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제2011-44호) 14

◀ 공 고 ▶

○오천시장 인정시장 인정 공고(제2011-513호) 30

○도로지정 공고(북구청 공고 제2011-26호) 31

○「포항시 여성상」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32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39

회								
람								

훈 령

포항시 훈령 제 235호

포항시 물가모니터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5월 31일

포항시 물가모니터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포항시 지역의 물가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경제안정대책 추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시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과 자율적인 물가안정 감시체계를 유지하고자 포항시 물가모니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포항시 물가모니터(이하 “모니터”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사지역(시장, 대형유통업체 등)의 물가조사
2. 소비자 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그 밖에 시민의 소비생활안정을 위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임무

제3조(조사지역)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전역의 전반적인 물가조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지역을 선정한다.

- ① 읍·면 지역 시장(市場) 중 규모(점포수)가 큰 시장(市場) 3개소 이상
- ② 동지역 시장(市場) 중 규모(점포수)가 큰 시장(市場) 남·북구 각 3개소 이상
- ③ 지역진출 대규모점포, SSM(Super Supermarket) 전체수의 20퍼센트 이상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모니터는 조사지역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은 인구수, 상가분포 현황, 물가조사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 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조사대상의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 1. 해당 조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2.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사람
- 3. 소비자단체 활동 경험이 있거나, 모니터 임무수행에 관심이 있고 모니터 활동이 가능한 사람

제6조(해촉) 시장은 모니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 2.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 3. 연락두절, 교육 불참 등 위촉기관의 활동요청에 3회 이상 무단 불참 하였을 경우
- 4. 활동이 불성실하거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 5. 그 밖의 사유로 모니터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사기진작) 간담회, 교육, 연찬회 등을 통하여 모니터의 자질을 향상 시키고, 우수 모니터에 대하여는 산업연수, 표창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2조에 따른 임무(교육 참석을 포함한다)를 수행하는 모니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에 위촉된 모니터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1-519호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11. 5. 31.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명기하고, 합리적인 결산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명시(안 제3조제2항)
 -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나.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9조)

- 기금운용 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함

3.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8조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6.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번지, 전화 270-2204, FAX 270-2160, E-mail : rjudoi@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설치)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통합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u>제3조(통합기금의 설치)</u> 시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p> <p><u>제9조(통합기금의 결산)</u>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 통합기금 결산 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p>	<p><u>제3조(통합기금의 설치)</u>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통합기금을 설치한다.</p> <p>②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u>제9조(통합기금의 결산)</u>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p>

포항시 공고 제2011- 517호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05월 31일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인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인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개정(안 제6조제1항)
 - 당초 : 7명 이내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2009.6.10)제정

4. 참고사항

- 경상북도 세정과-1748(2009.6.1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예규)제정 통보

5.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0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 재정관리과(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우편번호 790-722, 전화 054-270-2503, FAX 054-270-2490.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시” 를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7명 이내” 를 “9명 이상 12명 이내” 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금고지정) ① (생 략)</p> <p>1. (생 략)</p> <p>2.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단치 단체의 금고 금융기관을 <u>당해</u>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 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3. ~ 4.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2조(금고지정)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해당</u> ----- ----- -----</p> <p>3.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조(금고지정기준) ① (생 략)</p> <p>1. (생 략)</p> <p>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p> <p>3. ~ 5. (생 략)</p> <p>② (생 략)</p>	<p>제3조(금고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7명 이내</u>로 구성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6조(구성) ① ----- -----<u>9명 이상 12명 이내</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수당) ----- ----- -----<u>그 밖에</u>----- -----</p>
<p>제15조(금고의 중도 해지) ① 시장은 약정서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u>기타</u>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p>	<p>제15조(금고의 중도 해지) ① ----- ----- -----<u>그 밖에</u>-----</p>

현 행	개 정
<p>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 략)</p> <p>제16조(자금운영 보고)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산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p> <p>-----</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자금운영 보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u>그 밖에</u>-----</p> <p>-----</p>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1 - 44호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 5. 30 .

- 1. 사업의 명칭 : 포항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사업
- 2. 사업의 목적 :
 -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기반시설의 정비,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대지의 효율증진
 - 기성 시가지내 개발가능지의 절대적인 부족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택지의 안정적 공급 도모
 -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공간 형성 유도 및 쾌적한 주택지를 조성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 도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포항시 북구 장성동 산50·양덕동 산224번지 일원
- 면 적 : 393,585㎡

4. 사업시행자 : 장성침촌지구 도시개발조합장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6. 5. 30일 까지

6. 시행방식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 내용 : 붙임

8.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인가로부터 20일간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4)

9. 의제되는 인.허가등의 고시 및 공고사항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같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 및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장성3지구	북구 장성동	393,585	-	393,585	경고제288호 2001.09.25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S=1/1,200)

: 게재생략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

1-1-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93,585	-	393,585	100.0		
주거 지역	소 계	389,850	감)22,223	367,627	93.4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143,943	143,943	36.6	
	제3종일반주거지역	389,850	감)166,166	223,684	56.8	
자연녹지지역	3,735	증)22,223	25,958	6.6		

1-1-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1-2. 기반시설의 설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2-1. 교통시설

1-2-1-1. 도로

① 도로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개)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	연 장 (m)	면 적 (㎡)	노선수 (개)	연 장 (m)	면 적 (㎡)
합 계	33	6,554	85,284	1	279	5,652	6	1,345	20,353	26	4,930	59,279
광 로	1	678	6,171	-	-	-	-	-	-	1	678	6,171
대 로	1	543	13,903	-	-	-	-	-	-	1	543	13,903
중 로	19	4,296	58,842	1	279	5,652	6	1,345	20,353	12	2,672	32,837
소 로	12	1,037	6,368	-	-	-	-	-	-	12	1,037	6,368

②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계			1개노선			6,600 (678)						
기정	광로	3	3	40 (8)	주 산 도로	6,600 (678)	광로3-7	대로1-1	자 동 차 전용도 로	장성 지구	경 고 제 9 2 호 1993.03.1 6	
소계			1개노선			543						
신설	대로	3	침1	25	집 산 도로	543	광로3-3 장 성 동 산 47-3	중로2-침1 장 성 동 694-2	일반 도로	-	-	
소계			1개노선			279						
신설	중로	1	침1	20	집 산 도로	279	대로3-침1 장 성 동 산 51-9	중로3-침1 양 덕 동 산 224-5	일반 도로	-	-	
소계			6개노선			1,345						
신설	중로	2	침1	15	집 산 도로	303	대로3-침1 장 성 동 694-1	양 덕 동 산 219-1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침2	15	집 산 도로	409	대로3-침1 장 성 동 산 51-8	장성동 730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침3	15	집 산 도로	307	대로3-침1 장 성 동 산 49	소로3-침1 장 성 동 산 57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침4	15	집 산 도로	94	중로2-침2 장 성 동 산 51-13	중로3-침2 장 성 동 698-2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침5	15	집 산 도로	172	중로2-침2 장 성 동 산 51-13	중로2-침3 장 성 동 산 58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2	침6	15	집 산 도로	60	중로2-침3 장 성 동 산 58	중로3-침10 장 성 동 산 58	일반 도로	-	-	
소계			12개노선			2,672						
신설	중로	3	침1	12	집 산 도로	899	광로3-3 양 덕 동 925-7	중로2-침1 양 덕 동 산 220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침2	12	집 산 도로	381	대로3-침1 장 성 동 694-2	중로2-침2 장 성 동 산 54-1	일반 도로	-	-	

※ ()구역 내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침3	12	국지 도로	163	중로2-침2 장성동 산 51-8	중로3-침2 장성동 694-3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침4	12	국지 도로	71	중로2-침4 장성동 산 54	중로3-침2 장성동 700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침5	12	국지 도로	172	중로2-침2 장성동 산 51-11	중로2-침3 장성동 산 50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침6	12	국지 도로	126	중로2-침5 장성동 산 57-1	중로3-침5 장성동 산 50-1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침7	12	국지 도로	126	중로2-침5 장성동 산 58	중로3-침5 장성동 산 50-8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침8	12	국지 도로	130	중로2-침5 장성동 산 57-1	소로3-침1 장성동 624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침10	12	국지 도로	391	중로2-침3 장성동 산 49	중로3-침8 장성동 624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침11	12	국지 도로	82	중로2-침3 장성동 산 58	중로3-침10 장성동 산 58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침12	12	국지 도로	69	중로2-침3 장성동 산 58	중로3-침10 장성동 산 58	일반 도로	-	-	
신설	중로	3	침13	12	국지 도로	62	중로2-침3 장성동 산 57	중로3-침10 장성동 산 58	일반 도로	-	-	
소계				12개노선		1,037						
신설	소로	3	침1	6	국지 도로	289	광로3-3 장성동 산 60	장성동 764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침2	6	특수 도로	10	광로3-3 장성동 산 45	장성동 산 45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침3	6	특수 도로	35	대로3-침1 장성동 산 47	중로3-침10 장성동 673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침4	6	특수 도로	34	대로3-침1 장성동 산 51-26	중로3-침5 장성동 산 51-11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침5	6	특수 도로	34	대로3-침1 장성동 산 51-7	중로3-침3 장성동 산 51-7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침6	6	특수 도로	34	중로3-침6 장성동 산 50-6	중로3-침7 장성동 산 58	보행자 전용도로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침7	6	특 수 도로	34	중로2-침3 장성동 산 58	중로3-침7 장성동 산 58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침8	6	특 수 도로	10	광로3-3 장성동 산 58	중로3-침10 장성동 산 58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침9	6	특 수 도로	24	중로3-침10 장성동 산 57	소로3-침1 장성동 산 60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침10	6	특 수 도로	34	중로2-침3 장성동 산 57	중로3-침8 장성동 산 57	보행자 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침11	6	국지 도로	378	중로2-침1 양덕동 990	중로3-침1 양 덕 동 962-3	일반 도로	-	-	
신설	소로	3	침12	6	특 수 도로	121	중로2-침2 장성동 738	중로3-침14 장성동 753	보행자 전용도로	-	-	

1-2-1-2. 주차장

①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증)2,425	2,425	-	
신설	침1	장성침촌 1주차장	장성동 698-1일원	-	증)1,388	1,388	-	
신설	침2	장성침촌 2주차장	장성동 산50-5일원	-	증)1,037	1,037	-	

1-2-2. 공간시설

1-2-2-1. 공원

①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개소			-	증)23,512	23,512	-	
신설	근	장성침촌 근린공원	근린공원	장성동 산51-13 일원	-	증)10,037	10,037	-	
신설	체	장성침촌 체육공원	체육공원	양덕동 964-1일원	-	증)10,957	10,957	-	
신설	소1	장성침촌 1소공원	소공원	장성동 698-1일원	-	증)1,286	1,286	-	
신설	소2	장성침촌 2소공원	소공원	장성동 752일원	-	증)1,232	1,232	-	

1-2-2-2. 녹지

①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개소			8,000	감)1,859	6,141	-	
변경	54	녹지	완충녹지(도로변)	광로3-5호선기점 ~ 대로3-15호선	8,000	감)1,859	6,141	경고제288호 2001.09.25	

1-2-2-3. 공공공지

①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	증)6,407	6,407		
신설	침1	장성침촌1공공공지	양덕동 1176 일원	-	증)5,526	5,526	-	
신설	침2	장성침촌2공공공지	양덕동 990 일원	-	증)881	881	-	

1-2-3. 학교시설

①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증)27,072	27,072		
신설	초	침촌초등학교	초등학교	장성동 산51-12일원	-	증)13,155	13,155	-	
신설	중	침촌중학교	중학교	장성동 산56일원	-	증)13,917	13,917	-	

1-2-4. 방재시설

①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개소			-	증)6,499	6,499		
신설	저1	침촌1저류지	저류시설	양덕동 925-2일원	-	증)3,912	3,912	-	
신설	저2	침촌2저류지	저류시설	장성동 736일원	-	증)2,587	2,587	-	

1-3. 기반시설의 설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도(S=1/1,200)

: 게재생략 (제목변경)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1.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24개 가구	265,742		265,742	
1	A1	83,472	양덕동 산222 일원	83,472	• 본 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이므로 환지계획 승인 후 이를 획지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함 ※ 단 B1, B2, B6, B7, B16 은 500㎡미만 분할금지
2	A2	107,575	장성동 산45 일원	107,575	
3	B1	2,473	장성동 694-3 일원	2,473	
4	B2	3,443	장성동 산51-8 일원	3,443	
5	B3	14,543	B3-① 장성동 698-1일원	1,388	
			B3-② 장성동 산51-12일원	13,155	
6	B4	2,189	장성동 698-3 일원	2,189	
7	B5	3,163	장성동 산54 일원	3,163	
8	B6	2,797	장성동 산51-11 일원	2,797	
9	B7	2,780	장성동 산50 일원	2,780	
10	B8	2,007	B8-① 장성동 산50-5일원	1,037	
			B8-② 장성동 685 일원	970	
11	B9	2,007	장성동 산58 일원	2,007	
12	B10	2,007	장성동 산50-9 일원	2,007	
13	B11	2,000	장성동 산58 일원	2,000	
14	B12	13,917	장성동 산56일원	13,917	
15	B13	2,040	장성동 산57-6 일원	2,040	
16	B14	1,934	장성동 산57 일원	1,934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17	B15	856	장성동 622일원	8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사업이므로 환지 계획 승인 후 이를 획지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함 ※ 단 B1, B2, B6, B7, B16은 500㎡미만 분할 금지
18	B16	3,652	장성동 674 일원	3,652	
19	B17	2,976	장성동 산58 일원	2,976	
20	B18	2,524	장성동 산58 일원	2,524	
21	B19	2,079	장성동 산58 일원	2,079	
22	B20	2,020	장성동 산58 일원	2,020	
23	B21	1,902	장성동 산57 일원	1,902	
24	B22	1,386	장성동 산57 일원	1,386	

2-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2-1. 공동주택용지(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A1, A2	A1, A2	용도	권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불허	•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격리병원, 유스호스텔, 교정 및 군사시설	
		건 폐 율	• 50% 이하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 50%이하)		
		용 적 률	• 300% 이하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 300%이하)		
		층 수	최 고	• 25층 이하	
			최 저	-	
		배 치	• 배치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동거리 유지		
		형태 및 색채	• 경사형 지붕 권장,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 축 선	-				

2-2-2. 단독주택용지(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B1, B2, B4~B7, B8-②, B9~B11, B13~B22	B1, B2, B4~B7, B8-②, B9~B11, B13~B22	용도	권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불허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격리병원, 교정 및 군사시설	
		건 폐 율	• 60% 이하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 60%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 250%이하)		
		층 수	최 고	• 7층 이하	
			최 저	-	
		배 치	-		
		형태 및 색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 축 선	-				

2-2-3.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지정	
주1, 주 2	B3-①, B8-①	용도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주차장법」 및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 및 그 부속용도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주차장법」 및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 적	률	
		층 수	최 고	• 5층 이하
			최 저	-
		배 치	-	
		형태 및 색채	-	
건 축 선	-			

2-2-4. 학교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지정	
초, 중	B2-②, B12	용도	지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층 수	최 고	• 7층 이하
			최 저	-
		배 치	-	
		형태 및 색채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배색으로서 자연환경 친화적 색채를 권장	
건 축 선	-			

2-2-5. 공원용지

도면 번호	위치 (획지)	구 분		계 획 내 용
		용도	지정 불허	
체, 근 소1, 소 2	체, 근 소1, 소 2	용도	지정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공원, 근린공원 및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용도
			불허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울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용 적 륜		
		층 수	최 고	• 3층 이하
			최 저	-
		배 치	-	
		형태 및 색채	-	
		건 축 선	-	

2-3. 대문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색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획지)	계 획 내 용	비 고
-	진 지역	• 담장의 높이는 1.5m이하의 투시형담장이나 수목식재 등 자연친화적인 생울타리 설치를 권장	

2-4. 가구·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S=1/1,200)

: 게재생략

3.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3-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3-1-1. 차량출입불허구간

도면번호	위치(획지)	계 획 내 용	비 고
-	A1, A2, 완충녹지 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로3-3호선 완충녹지변 전구간 차량출입 금지구간 지정 • 광로3-3호선 및 종료1-침1호선에서 접속하는 도로 교차부(공동주택지변) : 30m 	세부사항 도면참조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11-513 호

오천시장 인정시장 인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시장을 인정시장으로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 년 05 월 30일

- 아 래 -

- 시 장 명 : 오천시장
- 대 표 자 : 정 학 봉
- 소 재 지 :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823-1외 64필지
- 시장면적 : 토지면적(9,856㎡)
 건물연면적(7,585.8㎡)
 점포수(110개)

포항시 북구청 공고 제 2011 - 26 호

도로지정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그 위치를 지정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건명 : 도로의 지정
- 2. 도로의 위치지정내용

대지위치	도로지번	지정면적(m ²)	도로길이(m)	도로너비(m) (평균값)	지정일자	비고
포항시 북구 홍해읍 용전리 33,33-1,34번지	33,34번지	141.0	54.25	4.0	2011.5.26	

- 3. 도면 : 북구청 건축지적과 비치

2011. 5. 26

포항시 북구청장

문의처 : 건축과(054-240-7473)

「포항시 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지위 향상에 귀감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 봉사한 「포항시 여성상」 수상 후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11년 5월 25일

1. 후보자 추천

- 기 간 : 2011. 5. 25(수) ~ 6. 13(월) (20일간)
- 선정인원 : 3개분야 3명(사회봉사부문 1, 양성평등부문 1, 교육·문화·예술부문 1)
※적격자가 없을 시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추천자격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단체장
 - 일반인의 경우 성인 30인의 연서
- 추천서류
 - 포항시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1호 서식)
 - 공적조서 각 1부(별지 2호 서식)
 - 포항시 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 명부 1부(별지 3호 서식)
※ 추천자가 일반인일 경우에 한하며 성인 30인의 연서(원본)
 - 이력서 및 기타 공적 증빙서류 각 1부(자유서식)
 - 명함판 사진 2매
※ 제출서류는 접수 후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추천대상

- 남녀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
- 우리시 출신으로 여성발전을 위하여 큰 공적이 있는 자
※ 우리시 출신으로 타지역 거주자 추천가능

3. 추천제외자

- 기존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장 훈격의 「포항시 여성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수상자로 선정되기 곤란한 흠결이 있는 자

4. 시 상

- 일 시 : 제16회 여성주간기념 행사시
 - 선 정 : 추천된 자에 한하여 “포항시 여성발전위원회” 에서 심의·선정
 - 발표(예정) : 2011. 6. 20(월)

5. 접수 및 문의

- 접 수 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여성가족과
-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당일 도착분에 한함)
 - ※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문 의 : 포항시 여성가족과(김현숙 270-3012~3014)

(별지 1호 서식)

포항시 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 화	
		휴 대 폰	
성 명	(한자 :)	생년월일	

2. 공적개요

위의 사람을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제16회 여성주간을 기념하여 자랑스러운 포항시 여성상 수상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인)

포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공적조서 1부
 2. 이력서 1부
 3. 기타 공적을 증빙하는 서류 1부
 4. 추천자가 일반일 경우 성인 30인 이상의 연서(포항시 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 명부) 1 부

(별지 2호 서식)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주 등록번호 (생년월일)												
본 적												
주 소	(전화)											
직 업						소 속						
직 위						등 급(직급,계급)			근무(공적)기간			
									년	월		
공적요지						공적분야코드						
추천흔적	포 항 시 장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인		
<p>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추천관 직위 성명 인</p>												

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과거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

(별지 3호 서식)

포항시 여성상 수상후보자 추천 명부

성명	한글 : _____ (한자 :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주소	_____

추천자							
연번	성명	주소	서명	연번	성명	주소	서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상기인을 2011년도 포항시여성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1년 월 일

포항시장 귀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11년 5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1. 5. 30

포항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장

시행일	5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정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감	공단	양역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약아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	눌대지수	곡강천 복류수	(수자원공사)	
			동지의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예읍	산북1개읍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건강상 유해영양물질	4. 납(Pb)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0.1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27	불검출	불검출	0.18	불검출	
	6. 비소(As)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크롬(Cr)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1.2	0.9	1.2	1.6	0.4	0.9	0.8	1.4	1.1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4	0.02	0.03	0.05	0.06	불검출	0.02	0.04	0.03	
	건강상 유해영양물질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다이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1. 1,4-다이옥산(1,4-Dioxane)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	32. 유리잔류염소(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44	0.25	0.60	0.29	0.46	0.34	0.51	0.28	0.85	
	33.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59	0.042	0.061	0.070	0.048	0.030	0.055	0.034	0.041	
	34.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40	0.029	0.048	0.044	0.026	0.018	0.031	0.020	0.034	
	35. 브로모디클로로메탄(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6	0.011	0.012	0.020	0.016	0.010	0.018	0.010	0.007	
	36. 디브로모클로로메탄(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3	0.002	0.001	0.006	0.006	0.002	0.006	0.004	불검출	

구분	검사항목	경수장, 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강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야 (수자원공사) 신뢰기계장부
			안계염수		임하염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염수		진전지	늘터지수	곡감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홍해읍	
심미적영양물질	37.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89	74	85	124	117	40	65	96	85
	38.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₂)	10mg/ℓ이하	2.9	3.1	4.3	3.0	2.5	1.3	2.6	2.3	5.8
	39.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1.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2.색도(Color)	5도이하	1	1	1	1	1	1	1	1	불검출
	43.세제(음이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4.수소이온농도(pH)	5.8-8.5	7.4	7.3	7.4	7.4	7.4	6.9	7.0	7.2	7.6
	45.아연(Zn)	3mg/ℓ이하	0.025	0.006	0.004	0.026	0.022	0.005	0.007	0.248	불검출
	46.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21	14	12	31	30	13	22	16	12
	47.총발전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166	122	139	260	15	72	126	173	219
	48.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망간(Mn)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0.탁도(Turbidity)	0.5NTU이하	0.06	0.08	0.14	0.23	0.06	0.07	0.09	0.07	0.06
	51.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38	16	18	57	54	13	28	48	19
52.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2	불검출	0.04	0.0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4	
판정		경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사항목	경수장 급수지역 기준	유강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용흥동	송동리	환호동	해도동	택전리	윤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전류염소	4.0mg/ℓ이하	0.33	0.06	0.60	0.49	0.56	0.25	0.48	0.42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17	0.007	0.002	0.066	0.029	0.027	0.010	0.168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12	12	12	26	31	13	26	16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정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모두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포항시 민원센터 **빠른콜 270-8282**, 학야정수장 230-4791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